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직 및 업무 정비 등〉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9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이송 개념 정의(안 제2조)	3
2.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직 및 업무 정비(안 제25조, 안 제25조의2 · 제31조의5 신설)	5
3. 관계기관 의견	13

I. 개요

1.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39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주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28.

(3) 회 부 일 : 2026. 1. 29.

나.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체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교육 및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고, 통합 이송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이송 개념 정의(안 제2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이송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2조제6호).

[illegible]

나. 검토의견

□ 기존에 동법 및 하위법령(이하 “동법등”)에서 ‘이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을 별도로 동법등에서 규정하지는 않아,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송’은 법 제2조제2호¹⁾ 등과 같이 동법등의 여러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응급의료”에 포함되는 개념임.

□ 한편, 이송·전원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제2213901호)」이 발의(2025. 11. 4.)되어 있으므로²⁾, 법안 심사에 있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김윤의원안의 경우 ‘이송’과 ‘전원’을 구분하여 규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윤의원안, 안 제2조제6호·제7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송”이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원”이란 응급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2.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직 및 업무 정비(안 제25조, 안 제25조의2 ·제31조의5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센터 산하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과 같은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중앙센터 및 산하 조직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 또한, 중앙센터의 업무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이하 “중증도 분류 교육”),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조정·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중증도 분류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중앙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5조, 안 제3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u>설치·운영할 수 있다.</u> 1.·2. (생략)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 ----- ----- ----- -----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 9. (생 략)

<신 설>

<신 설>

10. · 11.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3. 제31조의5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4. ~ 10.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1.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조정 · 관리에 관한 업무

1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13. · 14.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권역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을 위한 상황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2. 관할 권역 내 응급환자의 중증
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이송 조정
및 중증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3. 119구급대 또는 관할 응급의료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
할 권역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이송병원 선정

4. 응급헬기 등 운용에 관한 권
역 단위 협력·조정

5.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
한 관할 권역 내 응급의료기
관의 병상 정보 및 수용 능력
의 실시간 관리 및 공유

6. 관할 권역 응급의료기관 및
119구급대 간 환자 인계 및
정보 공유 지원

7. 관할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 운영에 관한 모니터
링·평가·품질 향상 활동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단위의 이송 및
전원 관련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 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업무수행 절차,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등의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심화교육

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모든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그 내

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기본교육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소방청 및 교육과정·시설·전문인력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2. 심화교육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교육과정·시설·전문인력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이수 면제 대상 자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의 수료·평가, 그 밖에 교육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는 현재 중앙센터 내에 중앙상황실을 두고 산하조직으로 총 6개 권역³⁾에 광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⁵⁾에 근거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구급대원에 대하여 중증도 분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3) 권역 구분: 서울인천,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경기강원, 부울경남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 내용,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⑤·⑥ (생략)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이수해야 하는 연간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임할 수 있다.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현행 법령은 중앙상황실 및 광역상황실의 설치·운영 근거와 중증도 분류 교육의 총괄적인 수행 주체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중앙상황실 및 광역상황실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그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중증도 분류 교육을 중앙센터의 업무로 명시하여 해당 교육을 중앙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개정안 외에도 중앙센터의 조직 및 업무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⁶⁾되어 있으므로, 응급의료체계의 개선과 응급환자의 신속·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조직 및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지에 대하여 법안 심사 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직·업무 정비 관련 주요 내용)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제2213901호, 발의일 2025. 11. 4.)
안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u>하여, 전원 조정,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총괄하여야 한다. ② <u>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전국 단위의 응급환자 전원 조정 및 상황 관리 2. 전국 전원 조정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요청에 대한 협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원 조정 및 응급의료자원 관리 등에

6) 김윤의원·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진료권별 전원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이하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의 전원 조정 및 상황 관리
 2. 관할 권역 내 전원 조정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관할 권역 내 119구급대의 이송 요청에 대한 협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단위의 전원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제16833호, 발의일 2026. 2. 12.)

안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관리·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9의2.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분류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②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제3호,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개정안은 중증도 분류 교육에 있어 기본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교육기관에 소방청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증도 분류 교육의 유형 및 역할 분담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안 제2조의 경우 이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현행 법 체계에도 부합하므로 개정안 수용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직 및 업무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센터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중앙센터, 중앙상황실 및 광역상황실의 업무 체계를 규정하는 김윤의원 대표발의안 등과 함께 논의 필요

또한 안 제31조의5 신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중증도 분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실시 중임.
- 교육은 법률보다는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중증도 분류 기준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⁷⁾.

문 의 처

02)6788-5509

7) 또한 현행법 제31조의4에 따른 환자 중증도 분류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분류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병원 전 단계에서 분류하는 기준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 각각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병원 전 단계의 중증도 분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